

의안번호	2207132
의 퇴 인	김장겸 의원
회 답 일	2025. 2. 7.
추 계 번호	24B64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2 (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등)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무규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제3항에 따른 분담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제4항)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 용도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의무규정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의2 (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디지털복지기금 설치(안 제29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¹⁾
-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은 현행법 제4조²⁾의 보편적 의무 제도에

1)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함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의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의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할 의무가 있다.

③ 보편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서비스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의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의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전화 서비스
-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시내·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등 요금감면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체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시내전화·공중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 의무제공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 2가지로 분류

[표 1] 보편적 역무 제도 개요

구 분	서비스	의무제공사업자	재원부담
서비스 제공	유선전화 서비스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인터넷전화)	KT	손실분담 (매출액 300억원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선박무선전화 특수번호전화	제공사업자 자체 부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내·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번호안내 등)	해당 서비스 제공사업자 전부	
요금 감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서비스 의무제공은 KT가 제공 사업자로 지정되어,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KT에게 보전금을 분담하고,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 2] 사업자별 손실보전금 분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KT	SKT	LGU+	SKB	기타 ¹⁾	합계
'21회계연도	208	195	141	32	23	599

주 1) SK텔링크, KTM모바일, LG헬로비전 등 매출액 300억원 이상 사업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3] 취약계층 요금감면 사업자별 부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합계
			생계·의료	주거·교육			
SKT	1,430	139	1,226	359	220	2,118	5,492
KT	843	94	946	264	216	1,220	3,583
LGU+	691	62	991	286	158	995	3,183

주: '23년 이동통신 서비스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규모, 분담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담시킬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와 분담금 부담 규모 등 제도 설계 방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³⁾,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기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 기준, 기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금의 종류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음

3) 안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재원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표 4] 현행 취약계층 요금감면 내용과 개정안 비교

현행 취약계층 요금감면 (이동전화 기준)	개정안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지원 방식 및 비용 감면액 미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방식 및 비용 감면액 미정 ○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원 방식 및 비용 감면액 미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2023년 기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 2023년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1.26조원 수준
(1인당 월평균 감면액 13,335원)

구 분('23.12월)	감면자수	감면 금액
장애인	199만명	3,138억원
국가유공자	20만명	307억원
기초생활수급자	168만명	4,251억원
차상위계층	23만명	595억원
기초연금수급자	379만명	4,335억원
계	789만명	1조 2,626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